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72
----------	-----

제출년월일 : 2022. 3.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우리군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여행자플랫폼 역할수행으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플랫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명칭·위치 및 시설, 업무 및 조직(안 제5조~안 제6조)
- 나. 시설의 개관 및 이용, 사용허가 및 제외 등(안 제7조~안 제8조)
- 다. 사용료 및 감면·반환, 사용자의 설비 등(안 제9조~안 제10조)
- 라. 위탁운영(안 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2022년 당초예산에 109,888천원 반영되었음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11.11.~2021.12.0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평창군 문화·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여행자플랫폼 역할수행으로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플랫폼(platform)”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KTX진부역의 구역 안에 축조된 건축물을 무상 양도 받아 설치하고 군민(이 조례에서 군의 주민을 말한다)·관광객을 위하여 군의 문화·관광(이하 “문화·관광”이라 한다)에 관한 제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문화·관광 관계 법령”이란 문화·관광과 관계되는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말한다.
 - 가. 「지방자치법」
 - 나.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 다. 「관광진흥법」
 - 라. 「공연법」
 - 마. 그 밖에 문화·관광과 관련된 법률

3. “공연이나 전시, 행사”란 문화·관광의 건전한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예술적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연극·국악 등의 무대공연이나 작품·사진 등 전시 및 이와 관련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에 관해서는 문화·관광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군수는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KTX 진부역 여행자들을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명칭·위치 및 시설) ① 군수가 군민·관광객의 효과적 문화·관광을 위하여 관리 운영하는 문화·관광플랫폼의 명칭은 평창관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센터의 별칭은 “SPACE창공”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10에 둔다.

③ 센터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림픽 존(zone)

2. 작은문화예술터, 작은도서관

3. 여행자 휴게 공간

4. 회의실, 사무실

5. 그 밖에 군수가 안내창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6조(업무 및 조직) ① 센터는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이용자에게 홍보·안내 및 편의제공
2. 사용허가 및 사용자로부터 해당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3.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개인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의 공연이나 전시, 행사의 유치 및 초청
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관리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 이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에는 그 체계적·지속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소장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범위·처리방법, 소장과 필요한 직원의 정원·충원·복무·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직원의 충원·복무·보수 등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개관 및 이용)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8조에 따라 사용자의 야간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3시간의

범위에서 해당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추석. 다만, 각각 그 날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유지·보수 등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 단서 및 제3호에 따라 개관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할 경우에는 그 예정 7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센터의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군민·관광객 등은 제5항에 따른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④ 센터를 이용하는 군민·관광객 등(이 조례에서 “이용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의 이용질서를 지켜야 한다.

2.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 음주·흡연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4. 관련 시설물을 파손·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5. 그 밖에 관리책임자(직원을 포함한다)가 설명하는 이용방법, 운영규정 등에 따라야 한다.

⑤ 군수는 이용자 또는 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이용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운영규정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본인, 다른 이용자 또는 센터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때
3. 흥기, 위험한 물품 등을 몸에 지닌 때
4.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사용허가 및 제외 등) ① 군수는 기관·단체 등이 공연이나 전시,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해당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관·단체 등은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같은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해당 접수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군수는 해당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기관·단체 등(이 조례에서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군수는 센터의 설치목적에 고려하고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 및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

② 군수는 기관·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정치적·종교적 목적의 행사나 집회 또는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4. 해당 시설의 관리 운영상 지장을 줄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관광 관계 법령 및 센터의 설치목적상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③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2. 운영규정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해당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④ 해당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제1호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파손·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나 전시, 행사가 취소된 때 군수에게 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
5. 그 밖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료 및 감면·반환) ① 사용자는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1일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나.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 다. 이용자들의 무료입장, 관람·감상 등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공연이나 전시, 행사를 할 경우
 - 라. 센터에서 유치 또는 초청하는 공연이나 전시, 행사를 개최할 경우
- 우

마.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100분의 50 감경

가. 군민 또는 군민단체가 센터의 관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경우

나.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공연이나 전시, 행사라고 인정할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준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전액 반환
2. 사용자가 해당 사용일 이전에 사용을 취소한 때: 100분의 90 반환.

다만, 사용일 이후에는 납부한 사용료 중에서 남은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는 공연이나 전시, 행사에 필요한 설비 또는 물품, 홍보물 등을 설치하거나 게첨·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각종 비용을 부담한다.
제2호의 비용부담도 또한 같다.
2. 군수는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설비 등의 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사용자는 군수가 제2항에 따라 철거한 설비를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수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사용자가 이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인수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설비를 임의처분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능력을 갖춘 군 소재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효과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제4항제5호에 따라 평창군 관광협의회에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공개모집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설치한 문화·관광플랫폼과 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위탁운영 중인 수탁자의 해당 위탁기간
은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군수는 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
하여 이 조례에 따른 수행체제로 정정·보완하는 등의 준비를 할 경우
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지역관광협의회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지역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에는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⑤ 협의회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설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발생요인 : 문화·관광플랫폼 운영비
- 관련조문 : 제6조(업무 및 조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의 지속적 관리 운영

나. 추계 결과

-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소요예산 : 109,888천원
 - 시설관리 인건비 2명 : 60,688천원
 - 사무관리비, 임차료, 여비 : 12,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 37,2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연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군비)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경제건설국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연락처	(033) 330 - 22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09,888	119,448	129,840	141,136	153,415	653,727
민간위탁금		109,888	119,448	129,840	141,136	153,415	653,727
자원 조달		109,888	119,448	129,840	141,136	153,415	653,727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9,888	119,448	129,840	141,136	153,415	653,727
	보통교부세	109,888	119,448	129,840	141,136	153,415	653,727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